

제 13 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 13.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가. **기업인**이라 함은 상품 무역,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공민을 말한다.

나. **기업인 방문자**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다음의 공민을 말한다.

(1) 서비스 판매자,

(2) 단기 서비스 공급자,

(3) GATS상의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에 기업내 전근자와 관련하여 정의된 관리자·임원 또는 전문가로서 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 또는

(4) 상품 판매에 관한 협상이 일반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협상을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자

다. **서비스 판매자**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판매대표로서 그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그 일방 당사국의 공민을 말하며, 그러한 대표는 일반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단기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다음의 인을 말한다.

(1) 타방 당사국에 상업적 주재 또는 투자를 가지지 아니하는 일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으로서 타방 당사국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에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

(2) 일시입국 허가신청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이었던 자

(3) GATS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에서 기업내 전근자와 관련하여 정의된 관리자·임원 또는 전문가, 그리고

(4) 다음의 서비스분야에서 자신들을 고용한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

업을 대신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자

- 1) 전문직 서비스
- 2)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 3) 통신 서비스
- 4) 금융 서비스, 그리고
- 5) 관광안내인 및 통역사, 그리고

(5)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4)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일시입국**이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주할 의사 없이 일방 당사국의 영토 안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제 13.2 조

일반 원칙

1. 제1.2조에 추가하여,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특혜적 무역관계, 양립할 수 있는 기초 위에서 일시입국을 촉진하고 일시입국을 위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자 하는 양 당사국의 상호 의사 그리고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토에서 국내 노동력 및 영구적인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국적 또는 시민권, 영구적인 거주 또는 영구적인 고용에 관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3.3 조

일반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13.2조에 따라 이 장의 규정과 관련된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회피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신속히 적용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공통의 정의 및 해석을 발전시키고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그 영역 안으로 기업인이 입국하는 것 또는 그 영역 안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규율하는 조치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는 기업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사국이 한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증 또는 고용을 인가하는 그 밖의 서류를 단순히 요구하는 것은 이 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한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3.4 조 일시입국의 허용

1. 이 장에 따라 그리고 부속서 13A 및 부록 13A.1의 규정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공중보건 및 안전과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조치에 따라 달리 입국할 자격이 있는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2.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기업인의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가. 고용의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또는

나.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자의 고용

3. 당사국이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 서류의 발급을 제2항에 따라 거절할 때에는, 그 당사국은,

가. 그 기업인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 타방 당사국에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통지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장에 규정된 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기업인의 일시입국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3.5 조 정보의 제공

제19.2조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 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타방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료를 타방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 나.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요건에 관한 설명 자료를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이 동 자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역과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공표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게 한다.

제 13.6 조

분쟁 해결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거절 또는 제13.2조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제20.6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가. 그 사안이 관행의 형태를 수반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소진한 경우

2. 권한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6월 이내에 사안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나호에 규정된 구제조치가 소진된 것으로 본다.

제 13.7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 제1장(총칙)·제2장(일반정의)·제20장(분쟁 해결)·제22장(행정 및 최종조항)·제19.2조·제19.3조 및 제19.4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게 입국 조치와 관련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